「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 08. 04 (화) 이만재 의원외 2인

나. 회부일자 : 2009. 08.24 (월)

다. 상정일자 : 2009. 08.24 (월)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평창군의회 의원 이만재)

가. 평창군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의정모니터 구성 및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정모니터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제보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제보사항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의정모니터 간담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의정모니터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노재철)

가.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보면,

- 의정모니터 구성은 각 읍·면별 여성 1인을 포함한 2~3인으로 구성하고,
- 의정모니터는 의정활동 중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민 불편사항 주민의견 등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보대상으로 하며,
-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처리 후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고,
- 의정모니터의 전문성 향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최근 지방자치 동향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정모니터의 활용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